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2
----------	------

제출연월일: 2019. 2. 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관리주체 담당 부서별로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규정에 맞게 조례 내용 정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 담당부서별로 업무분담(안 제8조)

3. 근거법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18. 10. 22. ~ 11. 12.(의견없음)

※ 경제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체의견 제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제5조제4항 중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으로, “조치를 취해야”를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로 한다.

제8조 제목 “(전담반 운영)”을 “(업무의 분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른 장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행위</u></p> <p>3. ~ 6. (생략)</p> <p>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 ③ (생략)</p> <p>④ <u>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u></p> <p>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u>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8조(<u>전담반 운영</u>) <u>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 및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어린이</u></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u></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u></p> <p>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 ----- ----- <u>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u>업무의 분담</u>) ① <u>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u></p>

근 거 법 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

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지도·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48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이미정	전화번호 052-290-405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0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의 주요내용은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규정에 맞게 조례 내용 정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 담당부서별로 업무 분담(안 제8조)등에 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안전총괄과장 귀하			